

2025회계연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 안 번 호 : 제2697호
- 다. 제 출 일 자 : 2025. 5. 26.
- 라. 회 부 일 자 : 2025. 5. 29.

2. 제안내용

- 서울시 균형발전 관련 현안사업 추진 및 법정전출금 정산 등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7,424억 6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6,180억 89백만 원 대비 1,243억 17백만 원(7.7%)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618,089	1,742,406	124,317	7.7%
일 반 회 계	199	127,956	127,757	64,199.5%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427,231	1,481,204	53,973	3.8%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90,659	133,246	△57,413	△30.1%

나.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5,406억 46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5,379억 41백만 원 대비 27억 5백만 원(0.2%)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537,941	1,540,646	2,705	0.2%
일 반 회 계	1,377,662	1,468,787	90,125	6.5%
특 별 회 계	160,280	72,859	△87,421	△54.5%
도시개발특별회계	89,012	62,428	△26,584	△29.9%
균형발전특별회계	71,268	10,431	△60,837	△85.4%

4.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1) 세입예산안

- 2025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6,180억 89백만 원 대비 총 7.7%(1,243억 17백만 원) 증액된 1조 7,424억 6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7억 57백만 원(64,199.5%)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가 539억 73백만 원(3.8%) 증액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574억 13백만 원(△30.1%) 감액 편성됨

< 2025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618,089	1,742,406	124,317	7.7%
일 반 회 계	199	127,956	127,757	64,199.5%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427,231	1,481,204	53,973	3.8%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90,659	133,246	△57,413	△30.1%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79억 56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77억 57백만 원(64,199.5%)이 증액됨
- 보전수입등은 자치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예비사업(舊 소규모재생사업)’ 국

고보조금 정산반납액 1억 7백만 원과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하반기 징수예정인 ‘서울혁신파크’ 공간사용료 95백만 원과 주차요금수입 95백만 원을 반영하여 1억 90백만 원이 증액됨
-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수입을 전환하여 반영한 것으로 1,272억 57백만 원이 순증되었음. 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추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세입결손 우려가 큰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일반회계로 귀속 회계를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으로 판단됨. 다만, 여전히 매각 실현 가능성에는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수입의 실제 실현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세입 경정이 필요할 수 있음

< 2025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199	127,956	127,757	64,200.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97	287	190	195.9%
임 시 적 세 외 수 입	-	127,443	127,443	순증
국 고 보 조 금 등	102	102	-	-
보 전 수 입 등	-	125	125	순증

□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4,812억 4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39억 73백만 원(3.8%)이 증액되었음
- 그 외수입은 '남산곤돌라' 설치공사 미사용 선금 반환금 69억 67백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 우선시공분 공사 착수를 위해 지급된 선금금 80억 원 중 '25.3월 기성검사 기준으로 확정된 기성금액 10억 33백만 원을 제외한 미사용분 전액을 반환 청구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음
- 공사 선금금 반환의 사유는 계약상대자인 (주)신동아건설이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자(조경, 철거업체)에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하도급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1)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지체없이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선금금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해당 세입 편성은 계약 위반에 따른 적절한 재정 대응으로 판단되나, 선금금 집행 이후 계약대상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금 지급 여부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다. 반환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468억 8백만 원)²⁾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313억 67백만 원 대비 149.2% 증가한 781억 7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과 세출지출액의 차이인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완료에 따른 정산금을 반영하였음

< 2025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427,231	1,481,204	53,973	3.8%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3,816	34,015	198	0.6%
임 시 적 세 외 수 입	9,059	16,026	6,967	76.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25	325	-	-
지 난 연 도 수 입	988	988	-	-
국 고 보 조 금 등	684	684	-	-
보 전 수 입 등	31,367	78,175	46,808	149.2%
내 부 거 래	1,350,992	1,350,992	-	-

2)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순세계잉여금(a-b-c)	78,175	31,367	98,876
잉여금(a)	380,725	422,572	530,349
다음연도 이월액(b)	301,654	390,567	428,287
보조금집행잔액(c)	896	638	3,186

** 2025본예산 31,367백만원, 추경예산(안) 78,174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332억 46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74억 13백만 원(△30.1%)이 감액됨
-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31억 35백만 원은 당초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안에서는 전액 감액되었음
- 최초 편성 시 적용된 매각 예정금액은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이른바 탁상감정³⁾에 근거한 것으로, 현실적인 매각 가능성과 가격 산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세입 추계가 미흡했다고 보임
-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회계에 1,272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재편성한 것은 보다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나, 초기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감정평가 등 사전 검증 없이 거액의 세입을 반영한 것은 재정계획의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개선이 필요함
- 향후에는 주요 공유재산매각 수입 편성 시 감정평가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추계를 우선하는 한편, 회계 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산정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 감정평가와 탁상감정 결과 비교

(자료: 서부권사업과)

구 분	구 분	감정평가액	세입추계	비 고
금회 추경	실제 감정평가	4,545	1,273	계약금(10%) + 1회 분납금
본 예산	탁상감정	5,826	1,631	

○ 사 유

- 탁상감정은 현장 특성, 법적 규제,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서류로만 확인하는 개략적인 추정 가액이며,
- 실제 감정평가는 현장 조사 및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가치를 산정 함

< 2025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90,659	133,246	△57,413	△30.1%
경 상 적 세 외 수 입	728	675	△53	△7.3%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63,581	906	△162,675	△99.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350	26,350	-	-
보 전 수 입 등	-	15,317	15,317	순증
보 전 수 입 등	-	89,998	89,998	순증

< 2025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회계	세부사업명 (소관부서)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추경 사유
총 계				196,027	320,344	124,317	
1	증액	일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균형발전정책과)	-	107	107	도시재생예비사업 종료에 따른 자치구 정산 반납금
2	증액	일반	국고보조금등반환금 (균형발전정책과)	-	17	17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 (지역혁신체계지원반납금)
3	증액	일반	공유재산임대료 (서부권사업과)	64	159	95	서울혁신파크 공간사용료
4	증액	일반	주차요금수입 (서부권사업과)	-	95	95	서울혁신파크 주차요금
5	증액	일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서부권사업과)	-	127,257	127,257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수입금
6	증액	일반	그 외수입 (서부권사업과)	-	186	186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및 공공요금
7	증액	도시 개발	기타이자수입 (도시정비과)	741	939	198	남산곤돌라 설치공사 선급금 약정이자
8	증액	도시 개발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도시정비과)	522	7,489	6,967	남산곤돌라 설치공사 미사용 선금 반환
9	증액	도시 개발	순세계잉여금 (도시정비과)	31,367	78,175	46,808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

연번	구분	회계	세부사업명 (소관부서)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추경 사유
10	감액	균형 발전	공유재산임대료 (서부권사업과)	95	-	△95	서울혁신파크 공간사용료 일반회계로 변경
11	증액	균형 발전	주차요금수입 (서부권사업과)	53	95	42	서울혁신파크 주차요금
12	감액	균형 발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서부권사업과)	163,134	-	△163,134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수입금 일반회계로 변경
13	증액	균형 발전	자치단체간부담금 (동북권사업과)	-	60	60	노해로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자치구 부담금
14	증액	균형 발전	자치단체간부담금 (동북권사업과)	-	92	92	휘경유수지일대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자치구 부담금
15	증액	균형 발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서부권사업과)	-	100	100	성산로일대 입체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자치구 부담금
16	증액	균형 발전	그 외수입 (서부권사업과)	52	259	207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및 공공요금
17	증액	균형 발전	순세계잉여금 (균형발전정책과)	-	15,317	15,317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
18	증액	균형 발전	기타회계 전입금 (균형발전정책과)	-	89,998	89,998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감소 대응

(2) 세출예산안

- 2025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조 5,379억 41백만 원 대비 27억 5백만 원(0.2%) 증액된 1조 5,406억 46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901억 25백만 원(6.5%) 증액, 도시개발특별 회계는 265억 84백만 원(△29.9%) 감액, 균형발전특별회계는 608억 37백만 원(△85.4%) 감액되었음

< 2025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1,537,941	1,540,646	2,705	0.2%
일반회계	1,377,662	1,467,787	90,125	6.5%
특별회계	160,280	72,859	△87,421	△54.5%
도시개발특별회계	89,012	62,428	△26,584	△29.9%
균형발전특별회계	71,268	10,431	△60,837	△85.4%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건의 사업에서 903억 70백만 원이 증액되고, 3건의 사업에서 876억 65백만 원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결과 기정 예산 1조 5,379억 41백만 원 대비 27억 5백만 원(0.2%)이 증액된 1조 5,406억 46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기타회계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국고보조금반환금) 1조 4,367억 42백만 원 등을 제외한 순수 정책사업비는 기정 예산 1,291억 67백만 원 대비 265억 84백만 원(△20.06%)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을 편성사유별로 살펴보면,
 - 신규 및 증액사업 3건, 925억 49백만 원
 - 감액사업 3건, 131억 23백만 원
 - 국고보조금 반환 2건, 1억 26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소관부서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추경 사유
총 계				103,094	105,799	2,705	
신규 및 증액사업 소계				2,306	92,549	90,243	
1	일반 [신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균형발전정책과)	기타회계 전 출 금	-	89,998	89,998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감소 대응
2	도시 개발 [증액]	태화관길 3.1독립선언광장 유지관리 (균형발전정책과)	사 무 관 리 비	1	1	-	
			공 공 운 영 비	1	1	-	
			시 설 비	4	4	-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18	18	광장 내 키오스크 고장에 따른 구매 및 교체비용 편성
3	도시 개발 [증액]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광화문광장사업과)	사 무 관 리 비	-	100	100	상업시설 기획 및 엠디(MD) 용역비
			시 설 비	2,300	2,400	100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대상)
			시 설 부 대 비	-	27	27	현황측량비, 지하매설물 조사 비, 경계측량 수수료 등 과업 추가
감액 사업 소계				100,788	13,123	△87,665	
4	도시 개발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 (균형발전정책과)	사 무 관 리 비	738	737	-	소송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시운전기간 일반운영비 및 준공 후 곤돌라 운영 인건비 감액
			공기관등 에대한경 상적유타 사업비	2,325	1,618	△708	
			시 설 비	34,561	9,727	△24,834	
			감 리 비	1,728	450	△1,278	
			시 설 부 대 비	10	0.4	△10	
5	균형 발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예탁 (균형발전정책과)	예 탁 금	60,800	-	△60,800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감소 대응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소관부서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추경 사유
6	균형발전	예비비 (균형발전정책과)	일 반 예 비 비	626	590	△36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감소 대응
국고보조금 반환 소계				-	126	126	
7	일반	국고보조금 반환 (균형발전정책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	108	108	도시재생예비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8	일반	국고보조금 반환 (균형발전정책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	19	19	2024년 국고보조금 (지방시 대체계지원,인력운영비)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나.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①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사업별설명서 p.5, 예산서 p.11)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31억 34백만 원이 전액 감액됨에 따라,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899억 98백만 원의 기타회계전출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이와 같은 회계간 전출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소관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당초 감정평가 없이 내부 추정에 기반하여 과도한 규모의 매각 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추계한 것은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 재정을 통해 긴급 보전하는 방식은 회계간 재정운용의 형평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특히, 일반회계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사업의 재원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회계의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반복적

인 전출은 일반회계의 재정 유연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회계 간 전출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 증액사업

① 태화관길 3·1독립선언광장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1, 예산서 p.13)

- 3·1운동의 진원지로서 역사문화적 장소 가치가 높은 태화관길에 조성된 '3·1독립선언광장'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광장 내 키오스크 고장에 따른 구매 및 교체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도 기정예산 6백만 원 대비 18백만 원(300%) 증액한 24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함

< '3·1독립선언광장 운영관리' 결산 및 집행현황 >

(2025년 04월 30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2	(x-) 30,640	(x-) 0	(x-) 0	(x-) 30,640	(x-) 12,497	(x-) 0	(x-) 18,143
2023	(x-) 15,000	(x-) 0	(x-) 0	(x-) 15,000	(x-) 7,494	(x-) 0	(x-) 7,506
2024	(x-) 10,000	(x-) 0	(x-) 0	(x-) 10,000	(x-) 8,969	(x-) 0	(x-) 1,031
2025	(x-) 6,000	(x-) 0	(x-) 0	(x-) 6,000	(x-) 1,643	(x-) 0	(x-) 4,357

- 서울시는 '19.12월 '3·1독립선언광장' 조성을 완료한 이후 '21.5월부터 운영·관리 업무를 해당 자치구인 종로구에 이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사업비 결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일정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온 바, 키오스크 교체를 통한 이용환경 개선이라는 사

업취지는 타당하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세종로공원종합정비 (사업별설명서 p.10, 예산서 p.15)

- '종로구(세종로 80-1일대) 소재 광화문광장 내 세종로공원의 종합정비를 통하여 주차장 리모델링 및 광장과 연계한 시민편의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3억 원 대비 2억 27백만 원(9.9%) 증액한 25억 27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함
- 세종로공원은 4대문 안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⁴⁾에 해당됨. 또한, 지상 및 지하공간을 포함한 연면적이 약 48,483 m^2 규모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⁵⁾ 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⁶⁾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 교통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 및 인근 교통 환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개정 2009.7.30., 2011.3.17., 2020.10.5.>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5) 「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착수되어 인허가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해당 사업의 경우 2025회계연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아 이번 추경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5.3월에 체결되었으나, 설계의 기초자료로 필수적인 현황측량, 지하매설물 조사, 경계측량 수수료 등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위한 27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음
- 교통영향평가와 기초조사 항목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반영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임에도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추경에 뒤늦게 반영한 것은 계획 부족에 따른 미흡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기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요구됨

(3) 감액사업

① 지속가능산 남산 프로젝트 (사업별설명서 p.5, 예산서 p.15)

- 남산곤돌라 관련 소송 진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248억 34백만 원, 감리비 12억 78백만 원 및 서울시설공단(인수단) 위탁사업비 7억 7백만 원 등 당초 예산 342억 4백만 원 중 268억 29백만 원(68.2%)을 감액 하려는 것임
- 현재 서울시는 남산곤돌라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한국삭도공업 외 3명을 원고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소

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25.3.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서울시는 본안 1심 승소 후 전 구간 공사를 착수할 예정임을 밝히며, 하반기 공사 재개 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감액은 공사 일정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소송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남산곤돌라 조성사업의 준공시기도 지연(25년→27년)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한 남산곤돌라 인수단 운영비 15억 38백만 원 중 2025년도 서울시설공단의 최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된 8억 28백만 원을 제외한 7억 7백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공사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 예산의 68%에 해당하는 268억 2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맞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며,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추경 이후 잔여 예산에 대해서도 남은 사업 범위와 집행 일정에 맞춰 연내 집행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4) 국고보조금 반환

- 2024년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서 p.14)을 위해 19백만 원을 증추경 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로부터 성동구 송정10길 골목길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한 ‘도시재생 예비사업(舊 소규모재생사업)’ 정산반납액이 통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서 p.14)을 위해 1억 8백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필요한 조치로 생각함

▪ 송정10길 골목길 정비사업(성동구)	1,207천원
▪ 가는골 활성화 프로젝트(구로구)	947천원
▪ 세대가 공감하고 통하는 초록빛 휘경마을(동대문구)	24,343천원
▪ 미소로 인사하는 미인마을(중랑구)	6,949천원
▪ 다시 피어나는 꽃망우리 사랑방(중랑구)	6,188천원
▪ 만가지 도봉(도봉구)	67,967천원

다. 종합 의견

-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회계 간 세입 조정, 계약상 반환사유에 따른 선금 회수, 결산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계상 등은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며, 특히 서울혁신파크 공유재산 매각 수입 추계는 향후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수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은 특별회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입추계는 단순한 수입 과다 계상에 그치지 않고 회계 간 전출 등 세출 항목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전체 재정구조의 계획성과 자율성까지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세입 추계와 회계 간 재정운용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태화관길 3·1독립선언광장 유지관리” 사업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키오스크 교체 예산 편성은 사업의 목적상 타당하나, 지속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를 병행해야 할 것임
-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교통영향평가 및 기초조사 등 기본설계에 필수적인 항목이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된 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는 적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은 남산곤돌라 조성사업의 소송 진행에 따른 공사 일정 지연 및 준공 시기 변경 등 사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므로, 본예산의 68%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추경 하였음. 이는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방지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감추경 이후 잔여 예산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